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103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8-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26





돈 가스 부 락 크

정 보 공 개 서

(주)호경에프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호경에프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333-5000

F A X : 02-333-777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부 / 02-333-5000

가맹사업본부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한라시그마밸리 1차 609호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50번길 85-5

홈페이지 : www.cobaco.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주식회사 호경에프씨의 "돈가스부띠크")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돈가스부띠크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호경 에프씨	돈가스부띠크 외 3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50번길 85-5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5.6	1999.5.6	1999.5.6	이용재	031-987-2101	031-987-2107
	법인등록번호	110111-1692949		사업자등록번호	105-86-0003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 이사	(주)호경에프씨/이용재	돈가스부띠크 외 3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50번길 85-5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 5. 6.~현재		이용재	031-987-2101	031-987-2107
이사	(주)호경에프씨/이혜미	돈가스부띠크 외 3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50번길 85-5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 7. 6.~현재		이용재	031-987-2101	031-987-2107
감사	(주)호경에프씨/이경자	돈가스부띠크 외 3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50번길 85-5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 5. 6.~현재		이용재	031-987-2101	031-987-210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돈가스부딕크'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돈가스부딕크	
상 호	돈가스부딕크 000점	
상표(서비스표)	 LET'S MEAT 돈가스 부딕크	등록 제40202000013398호
광 고	돈가스, 라멘, 쌀국수, 덮밥 전문점 돈가스부딕크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8,487,930	6,471,107	2,016,823	7,275,140	317,574	665,319
2022년	10,361,422	7,970,616	2,390,806	9,922,581	447,481	360,281
2023년	10,782,797	8,094,312	2,680,486	11,297,610	599,691	297,680

상기 재무상황에 관련된 수치는 (주)호경에프씨에서 운영하는 [코바코], [치키니아], [마이하노이], [돈가스부딕크] 이상 4개 브랜드의 전체 수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이 용 재	대표이사	'99.5. ~ 현재	대표이사	경영총괄
관련 임원	이 경 자	감사	'99.5. ~ 현재	부사장	관리 및 감사
관련 임원	이 혜 미	이사	'14.7. ~ 현재	이사	경영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	1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호경 에프씨	가맹사업 경영	1999.05 ~	코바코(등록번호:20080100101)라는 돈가스/우동/초밥 전문점
		가맹사업 경영	2016.05 ~	치키니아(등록번호:20160504)라는 치킨 전문점
		가맹사업 경영	2020.06 ~	마이하노이 (등록번호: 20201764) 라는 베트남 음식 전문점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사용 기간)
돈가스 부딕크 (상표권)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당사가 정한 기준과 동일한 이미지로 제품판매의 영업 활동을 하도록 허용	'19.04.02 출원 '20.02.10 등록	출원번호 제4020190105491호 등록번호 제4020200013398호	(주)호경 에프씨	2030. 03. 1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2. 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호경에프씨	돈가스부띠크	이용재	2020. 6 ~ 현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50번길 85-5

3. [돈가스부띠크] 업종

영업표지	업종	
돈가스부띠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돈가스, 라멘, 쌀국수, 덮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돈가스부띠크'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돈가스부딕크'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돈가스부딕크'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본부	(주)호경 에프씨	코바코	20080100101	외식(돈카츠, 우동, 초밥)	165/0	159/0	131/0
		치키니아	20160504	외식(치킨)	0/0	0/0	0/0
		마이 하노이	20201764	기타외식 (쌀국수)	0/0	0/0	0/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지역	2023년말 가맹점 수	산출대상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							

8. [돈가스부띠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돈가스부띠크'의 가맹점 모집 혹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무소는 없으며, 가맹본부가 전국의 모든 가맹점을 직접 모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멀티사업부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대경빌딩	02-2151-3865

※귀하는 가맹예치금을 신한은행에 계약체결 당일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는 가까운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이용방법은 <http://banking.shinhan.com> 에서 먼저 인터넷뱅킹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을 한 후 화면 왼쪽에서 부가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음에 가맹금예치제를 찾아 가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시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돈가스부띠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크기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설비, 집기, 의탁자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주)호경에프씨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주)호경에프씨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주)호경에프씨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당 가맹사업은 돈가스부띠크, 돈가스부띠크 플러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350				
가입비	5,500	가맹계약체결 즉시 예치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고 반환을 요구할 시 [주1]참조		
교육비	3,850	가맹계약체결 즉시 예치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주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귀하에게 납입된 가맹금을 반환합니다.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본부와 귀하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 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귀하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가맹본부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락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귀하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비대상)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4,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가맹계약체결 즉시 예치	최초 계약기간 미준수 및 계약내용의 미준수, 위반 등	계약내용, 최초 계약기간 등의 계약준수를 담보 및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담보하고 상품대금의 채무액을 담보하는 금액
물류보증금	2,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합계	13,350
가입비	5,500
교육비	3,850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은 부가세 비대상)	2,000
물류보증금 (물류보증금은 부가세 비대상)	2,000

※ 계약이행보증금, 물류보증금은 가맹계약 종료 후 반환하는 금액임.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

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점포크기 : 49.5m²기준)

구분	납입 금액		납입 기한	반환조건	비고
	49.5㎡ 기준	3.3㎡ 기준			
합계	64,658	4,310.5			
인테리어	29,700	1,980	계약금 40%는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30%는 공사착공 후 7일 이내, 잔금 30%는 공사완료 시점의 기기 및 집기비품 등의 입고 전일 까지	착공 전에 설계, 디자인, 자재구입 등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공사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1) 착공 시점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계약금의 10%)을 공제 후 반환함. 2) 착공 시점 2일 전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계약금의 10%)과 공사(준비과정 및 철거 포함)에 투입된 실비를 공제한 후 반환함. 단, 반환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추가 납입해야 함. ※공사 착공과 준공은 가맹 계약 시 제공되는 공사 공정표에 기준합니다.	점포형태 및 지역/상권에 따라 차이남
주방설비비	15,950	1,063			
주방집기비	6,050	403			
가구	4,400	293			
간판	8,558				-BAR 타입 로고채널 (체인지홀) -간판추가시 별도 견적
※브랜드컨 셉 대가비	2,950 (수도권 기준)				당사가 지정한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 비용	-				영업시작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추가하는 비용은 없음
※지방 출장비	460(수도권 외 지방경비 /도서지역은 협의)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지방으로 봄
금융 비용	-				영업시작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추가하는 비용은 없음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점희망자임 -다만, 당사는 통행인의 수, 시장특성, 통행인의 특성, 업종의 특성 등 가맹점희망자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돈가스부띠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점포크기 : 49.5㎡ 기준]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64,658	총액의 40%	총액의 30%	총액의 30%
납부일		계약체결일	인테리어공사 착공 후 7일 이내	집기 입고 전일

※ 가맹금예치제 시행으로 인하여 계약금 총액의 40%를 초과할지라도 예치가맹금(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 전액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조리보수교육비	(주)호경에프씨	200 (가맹점대표 1인 1일 기준)	교육 실시 이전	교육 실시 이전 취소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장소는 가맹본부가 정함
가맹점의 유지보수비	(주)호경에프씨	실경비	공사시행이전	공사시행이전 취소시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후 해당건 발생시
로열티	(주)호경에프씨	매월 110(VAT포함)	익월 첫 발주 전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에 매월 지급하는 금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주)호경에프씨	실경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주)호경에프씨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주)호경에프씨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주)호경에프씨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 광고분담금은 현재 없으나 향후 부득이 필요한 경우 귀하와 사전에 협의하여 분담금을 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V.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 분(기준 : 2023년)	내 용 (단위 : 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기적 보고 사항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본부 공급상품 월말 실재고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의 월말 실재고	당월 말일 ~ 익월 2일	-온라인 등록 -문의: 운영팀
년간 월별 손익계산서	년간 월별 손익계산서	익년도 1/1~1/10	-서면제출 -문의: 운영팀

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직원이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회계장부를 포함하여 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성실하게 유지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직원의 관리점검, 지도, 기록을 위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가맹본부의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서면보고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적 이미지 관리나 시장구조의 변화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으로 점포이전, 노후시설의 보수 혹은 교체, 메뉴 및 판매가 조정 등을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 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 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돈가스부띠크'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받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 양도업무진행에 관한 영업지원비(200만원, VAT별도)와 입문과정 교육비, 계약 이행보증금은 정상납입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적 사업경영을 위하여 시설·집기·정착물·메뉴 등의 교체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기간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 ① 동업자간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부부를 포함)
- ② 직계 존비속간에 승계되는 경우
- ③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 변경되는 경우
- ④ 개인이 법인 설립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될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될 경우
- ⑤ 기존 점포가 대표자 명의변경 없이 점포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할 때
- ⑥ 동일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표자 명의가 법률적인 제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 단, 계속적으로 가맹점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추후 가입비를 징수한다. 단, 1개 가맹점 최초 1회에 한함.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이후 계약의 종료라 함)에는 귀하는 당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는 효력을 상실하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즉시 상호·상표·서비스표·로고·간판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된 이후,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정산 받는다.
- ② 전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

우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의 종료 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가맹본부의 관할법원에 즉시 신청하며 이에 대한 제경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의 철거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 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인해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상품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하자물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상환하지 않는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돈가스부띠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돈가스부띠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해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돈가스부띠크]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돈가스부띠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돈가스류, 라멘류, 쌀국수류, 덮밥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1. 상세한 상품·용역명은 [별지5:취급하는 상품내역 및 표준 판매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소비자 기호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문 및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지에 이를 공지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시 거래상대방(고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5:취급하는 상품내역 및 표준 판매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돈가스, 라멘, 쌀국수, 덮밥전문점	돈가스부띠크, 코바코, 마이하노이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인구 10,000세대를 기준으로 상권과 유동인구, 도시계획 등을 감안하여 설정 이 경우, 인구 기준은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http://sg.sbiz.or.kr)을 준용한다.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됨	계약 시 계약서 별지의 영업지역 확인서에 영업지역(지도) 표시 특수상권은 영업지역확인서 상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에서 제외된 별도 지역임

※귀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시 영업지역 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돈가스부딕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돈가스부딕크’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갱신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휴게소등 특수상권은 최초계약의 경우 [3년]이고 갱신의 경우 [2년] 단위로 한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응답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V-7-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조정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7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 5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5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9조 5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5항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5항

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5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통보 후 계약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1항
○ 돈가스부띠크 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을 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할 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및 용역을 귀하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17조 1항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7조 1항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 시,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제17조 1항
○ 귀하의 업무현황 및 관련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제17조 1항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를 하였을 경우	제17조 1항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7조 1항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17조 1항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가맹본부 대한 영업표지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 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귀하의 입문과정교육을 수료한 증명서를 가맹점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입문과정교육 인원은 4명이며, 귀하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인원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귀하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경우	제17조 1항
○ 가맹점 입문과정교육, 현장교육, 보수교육, 기타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귀하가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교육비용은 가맹본부가 책정하여 귀하에게 통지하며 귀하가 부담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1항
○ 시정요구 및 교육 입소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에 대해 수료하지 못한 경우	제17조 1항
○ 대금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본사로부터 상품 공급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7조 1항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영업양도, 대표자 명의변경, 점포소재지변경, 점포를 매각하는 경우	제17조 1항
○ [V-8-1]]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7조 1항
○ 동일한 사항으로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이의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항
○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담당 S/V(지역장)가 확인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내용확인을 못한 경우	제1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1항

② 최고없이 즉시 계약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라 최고없이 즉시 계약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고없이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17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제17조 2항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1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17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해당없음.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양도는 소정의

지급수수료를 납입하고, 양도인의 권리·의무는 모두 승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0일 전까지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및 양수인, 가맹본부가 양수도 계약 체결(5일정도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창업팀 (02-333-5000)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리행사나 위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0일 전까지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0~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기존 가맹점사업자, 상속인, 가맹본부의 계약 체결(5일정도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1개 가맹점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상속을 승인하면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가맹계약은 해지되고 상속자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⑤ 또한 가맹비는 면제되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 계약기간의 잔여 계약기간을 승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 귀하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나) 귀하는 가맹본부의 영업상의 비밀이나 노하우를 이용하여 제3자의 명이나 재산으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경쟁관계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돈가스부딕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2시간)	월 26일 이상	문의: 운영팀 (02-333-5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를 권장함	가맹본부의 기본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함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수퍼바이저	품질/조리(10항목) 서비스(10항목) 청결(10항목) 기타(1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사항 확인 → 가맹점사업자 면담 및 지도 → 매장점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운영팀	

※1.당사는 지도·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매장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매장 점검표는 지도·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의 담당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관리·감독 항목은 [별지6:매장 점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돈가스부띠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 고	광고 (TV,라디오,신문,잡지, 지역책자 등)	전국단위	아래 기준 참조		-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할 경우 : 15일 이전까지 행사 계획 공문 발송 및 동의서 작성 완료 -> 행사 진행 - 협의가 필요할 경우 : 15일 이전까지 협의안 발송 및 협의안 확정 -> 행사 진행 - 가맹점이 전액 부담할 경우 : 15일 이전까지 행사계획 공문 발송 및 본사의 승인 완료 -> 행사 진행 - 본사가 전액 부담할 경우 : 필요시 15일 이전 까지 행사 계획 공문 발송	
		지역단위	아래 기준 참조			
		가맹점단위	없음	전액		
	홍보물 (전단지,자석스티커, 현수막 등)	전국단위	50%	50%		
		지역단위	없음	전액		
		가맹점단위	없음	전액		
판 촉	할인판매	전국단위	협의 후 결정			
		지역단위	없음	전액		
		가맹점단위	없음	전액		
	경품제공	전국단위	50%	50%		
		지역단위	없음	전액		
		가맹점단위	없음	전액		
	시식회	전국단위	50%	50%		
		지역단위	없음	전액		
		가맹점단위	없음	전액		
	이벤트	전국단위	50%	50%		
		지역단위	20%	80%		
		가맹점단위	없음	전액		
	상품권	전국단위	전액	없음		
		지역단위	없음	전액		
		가맹점단위	없음	전액		
	할인권	전국단위	50%	50%		
		지역단위	없음	전액		
		가맹점단위	없음	전액		
기타			협의 후 결정			

※ 당사의 전국단위와 지역단위의 분담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전국단위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지역단위	광고비의 20%	광고비 8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전국단위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지역단위	광고비의 60%	광고비 4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가맹점모집광고	전국단위	전액 부담	없음
		지역단위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50%이상,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70%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사시작 15일 이전까지 광고문안 및 판촉내용, 판촉활동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행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사용된 인쇄물을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및 가맹점 경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가족, 종업원, 기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달리 합리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30조 2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 및 해지 후 1년간,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서 운영해 온 점포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영업 노하우를 이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경영 및 종사할 수 없다.	제30조 3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제30조 4항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상품의 공급], 제18조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제30조 [영업비밀 준수]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금 이백만원(₩2,000,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기타 제반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금 이백만원(₩2,000,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2항
○ "가맹점사업자"는 제17조 [계약의 해지 및 즉시 해지] 제③항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3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4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15~19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혹은 홈페이지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48~35 D-49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분석(약 7~13일) & 점포실측 - 입지주위 점포정보 제공 - 견적서 제공	D-48~35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35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지정한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 개설 승인 및 계약체결 - 가맹예치금을 제외한 계약금 본사 입금	D-34	-계약서 작성 시 -합계금의 40%
도면 설계 & 도면 확정, 공사일정 확정	- 점포 도면 설계(약 3일) - 점포 도면 확정 - 공사일정 확정	D-33~30	
인테리어등 실내외 공사착수	- 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공사 - 필요시 실외공사	D-29~15	-착공 후 7일이내 -합계금의 30% (중도금)
영업허가 및 제반준비	- 위생교육, 소방점검, 검사필증, 사업허가 등	D-14~8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본사 기본이수교육) - 현장 리허설교육	D-21~17 D-5~1	
집기 및 설비 등 입고	- 주방설비 및 집기 입고 - 초도물량 등 입고 - 기타	D-7~6	-집기설비 입고 전 -합계금의 30% (잔금, 초도물량 포함)
영업개시	- 오픈식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및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는 가맹금을 예치할 당시 점포를 이미 확보했을 경우이며, 점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점포를 개발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나, 부득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고객만족센터 02-333-5000).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을 개선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가맹점 전국 판촉 시 해당 판촉 일부지원	참여 가맹점	가맹계약기 간	소요되는 지원금액 일부 당사 부담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POS 기기 무상대여	"POS기기(본체/ 모니터/ ASP 外)를 계약기간 동안 무상대여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가능 가맹점	가맹계약기 간	기타 소모품 본사 무상지원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 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설명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 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당사는 '돈가스부딕크'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 또는 알선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

: 해당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돈가스부띠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기본이수교육	회사소개, 조리이론 및 실습, 점포운영기법, QSC관리기법,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이해, POS의 이해, 세무, 주문발주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본사 교육
현장교육	주방운영,接客운영, POS관리, 점포관리 등 실무 및 평가	실습교육, 개별교육	기본이수 교육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해당 가맹점에서 현장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조리, 기존 메뉴 조리 교정 등 필요한 과정	실습교육	필요시	당사 혹은 가맹점사업자의 요구 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돈가스부띠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교육내용	최소시간	비 용	비고
돈가스 부띠크	기본이수교육	5일	- 3,850(가맹계약금내 포함) - 기본이수교육 인원이 4명을 초과할 시 인당 50만원 추가	- 최초 계약 시 이수 - 1일 8시간
	오픈 교육	3일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귀하는 본사에서 기본이수교육 및 귀하의 가맹점 현장에서 리허설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이수교육은 계약체결이후 1개월 이내에, 리허설교육은 기본이수교육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유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직영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기획팀(02-333-50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 | | |
|------------------------------|-----|
|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1 |
| 2.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집기 등의 내역 | 별-2 |
| 3. 필수구입품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별-3 |
| 4. 취급하는 상품의 내역 및 표준판매가 | 별-4 |
| 5. 매장 점검표 | 별-5 |
| 6.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별-6 |
| 7.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별-7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집기 등의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필수구입품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취급하는 상품의 내역 및 표준판매가

구분	상품명	권장가격	비 고
돈가스	등심가스	8,000	
	적셔먹는 돈가스	9,500	
	치즈돈가스	9,000	
라멘	돈코츠라멘	7,500	
	토마토라멘	8,000	
	카라이라멘	8,000	
쌀국수	하노이쌀국수	9,000	
	눈물범벅쌀국수	11,000	
	하노이차돌쌀국수	10,000	
	스페셜고기폭탄쌀국수	14,000	
	소곱창쌀국수	16,000	
	고인돌대왕갈비쌀국수	17,000	
분짜&샐러드	분짜	14,000	
	하노이인더가든	12,000	
덮밥	소고기덮밥	8,000	
	돼지고기덮밥	7,500	
	커리라이스	6,000	
	카오팻무쌈	11,000	
	겉승(숯불돼지갈비덮밥)	12,000	
	파인애플새우볶음밥	8,500	
	숯불돼지고기볶음밥	9,000	
사이드	수제짜조	7,000	
	수제치즈짜조	8,000	
	모닝글로리	7,000	
	매콤닭날개튀김	8,000	
	허니포테이토	5,500	
	새우튀김(2PCS)	2,000	
	치즈스틱(2PCS)	2,000	
	치킨가라아게(5PCS)	3,500	
	순살돈가스	3,500	

매장 점검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구 분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상기와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돈가스부딕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인) 또는 서명

..... ○ (절취선)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돈가스부딕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인) 또는 서명